#### 공공심사위원회 운영지침

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

전부개정 2024. 10. 24. 지침 제433호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」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공공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공공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공공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의 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  - 1.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3명
    - 2.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3명
    - 3.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1명
    - 4. 의학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2명
    - 5. 심사평가원의 상근심사위원 및 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 10명
    - 6.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심사위원 2명
- 제3조(직무윤리 사전진단 등)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- ③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위원의 청렴 의무) ① 위원은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위원은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·공사·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위원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・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위원은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⑤ 위원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, 알선·청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- ②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6조(위원의 해임·해촉)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
  - 2.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교체 추천된 때
  - 3. 제4조에 따른 위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때
  - 4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때
- 제7조(위원회의 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.
  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

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회의 개최 일정, 안건 수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일을 추가,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  - 1.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
    - 2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,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서를 문서(전자 또는 서면) 등의 방법으로 위원 전원에게 송부하고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. ⑤ 제2조제2항제6호의 위원은 자동차보험심사와 관련한 안건이 있을 때에만
  - ⑤ 제2조제2항제6호의 위원은 자동차보험심사와 관련한 안건이 있을 때에만 참석하며, 자동차보험심사와 관련이 없는 안건의 회의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당사자와 권리· 의무자인 때
 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때
 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근무하는 때
  - 4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
  - ②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・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은 제1항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 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

- 제척·기피·회피 신청(확인)서를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·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회의의 심의·의결에서 제외된 위원은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나,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② 간사는「직제규정 시행세칙」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 소속 부의 장(직무대리인 등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회의록의 작성·보관)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수당 등의 지급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심사평가원의 직원 (직제 외 상시 근로하는 자를 포함한다)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13조(보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 부칙<지침 제433호, 2024. 10. 24.>

이 지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직무윤리 사전진단서

연번	진단 내용	체크	체크사항					
1	공공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.	예 ( )	아니오					
2	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	예 ( )	아니오					
3	공공심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·허가·면허·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.	예 ( )	아니오					
4	공공심사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·용역·계약 또는 연구·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.	예 ( )	아니오					
5	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·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.	예 ( )	아니오					
6	공공심사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, 단체,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예 ( )	아니오					
7	공공심사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·의무 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	예 ( )	아니오					
※ '예'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사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(			)					
	20 년 월 일							
	확 인 자		(서명)					

### 윤리서약서

직위: 공공심사위원회 위원

성명:

상기 본인은 공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임·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공공심사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
- 2. 공공심사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- 3.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·공사·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4.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5. 공공심사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6. 공공심사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7.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 행위 금지
- 8.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, 알선·청탁 행위 금지
- 9. 기타 공공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20 년 월 일

확 인 자 (서명)

## 서면심의서

「공공심사위원회 운영지침」제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합니다.

- 1. 회의명: 20 년도 제 차 공공심사위원회
- 2. 안건명:
- 3. 안건별 심의 의견

자문 결과			심의 의견			
연번	대상자	입원일수 불인정률 (단위: %)	동의 여부		ᅰᆈᇝᄸ	
			찬성	반대	제시 의견	

※ "동의 여부" 란은 대상자 전체 차수(입원)에 대한 자문 결과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 "찬성" 란에, 그 이외에는 "반대" 란에 "○" 표시합니다.("반대"인 경우에는 반드시 "제시 의견" 란에 해당 대상자 및 차수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)

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공공심사위원회 위원 (서명)

공공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## 제 척 • 기 피 • 회 피 신 청 (확 인 )서

본인은 20 년도 제 차 공공심사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척 · 기피 · 회피 사유가 있기에 신청(확인)서를 제출합니다.

구분	신청(확인) 사유	비고
제척	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당사자와 권리·의무자인 때	
	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때	
	위원이 해당 안건의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근무하는 때	
	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	
기피	위원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	
회피	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, 그 밖에 심의·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하는 때	
세부 내용		

※ 제척, 기피,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고란에 "○" 표시(중복표시 가능)하고, "세부 내용"란에 제척・기피・회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자(확 인 자)

(서명)